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96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형년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955,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17. 'D은 원고에게 22,649,968원 및 그중 7,430,29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24. D에게 송달되어 2013. 2. 8.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3701호 양수금 사건).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과 별도로, 소외 E유한회사가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은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1369호 양수금 사건, 'D은 E유한회사에게 8,347,005원 및 그중 2,192,232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대하여 2016. 7. 29.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6. 8. 3. D에게 송달되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다. D의 어머니인 소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3.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D(장남), G(장녀), 피고(차남), H(삼남)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D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3. 16.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3.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7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4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6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이가 있는 경우까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한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008조의2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와 을 제3~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D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협약하여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10. 5.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3. 16.까지 약 20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망인은 1994년경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이미 69세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12년이 되어서야 기초노령연금(월 94,600원으로 시작하여 월 300,000원까지 증액됨)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함께 살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받은 급여 중 대부분을 망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생활을 하였다.

③ 망인은 2017년 말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2018. 4.경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는 2018년경부터는 이전까지 해오던 경제활동(2017. 11.까지만 해도 I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을 중단하고, 약 3년간 요양병원 등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직접 망인을 돌보았다.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후의 생활비 역시 피고의 예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였다.

④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 다른 상속인들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⑤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이 2015년 추석 무렵 어머니(망인)를 모시는 자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게 하라는 뜻을 밝혔고, 피고가 망인을 2001. 10.부터 수발하였으며, 특히 2018. 1. 18.부터는 병수발까지 하였으므로 가족회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있을 뿐, D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9층 호

철근콘크리트

84.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경기도 파주시 대 7095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0951분의 43.25

(이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통거소)

